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61
----------	-------

발의연월일 : 2026. 8. 5.

발 의 자 : 송석준 · 김예지 · 박덕흠
박상웅 · 윤한홍 · 성일종
서범수 · 윤용근 · 곽규택
김대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폐업 이후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한 폐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상 판단이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사회안전망과 재기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음.

중소기업중앙회가 2025년 3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을 결심한 시점의 소상공인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원에 달하며, 평균 폐업비용도 2,188만원으로 나타났음. 즉, 폐업은 그 자체로서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또는 그 밖의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및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70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및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최저생계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 및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계측한 금액을 말한다.

1.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2. 그 밖의 폐업에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70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법률 제2170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및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u> <u>이 때 최저생계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및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계측한 금액을 말한다.</u> <u>1.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u> <u>2. 그 밖의 폐업에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